

## 부가가치세(VAT) 관련 DEGREE 181/2025/ND-CP 및 CIRCULAR 69/2025/TT-BTC

2025년 7월 1일, 정부는 부가가치세법(VAT) 법령 제48/2025/QH15호의 여러 조항 시행을 구체화한 Decree 181/2025/ND-CP(이하 "Decree 181")를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날, 재무부는 Circular 69/2025/TT-BTC(이하 "Circular 69")를 발행하여, VAT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0% VAT를 적용하기 위한 요구 서류 및 절차,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예정세율(세부 내용은 Circular 69의 Appendix I에 상세히 기재)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환급 VAT 결정(세부 내용은 Circular 69의 Appendix II에 따라) 및 5% VAT가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환급 VAT 결정(세부 내용은 Circular 69의 Appendix III에 따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Decree 181 및 Circular 6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0% VAT가 적용되는 수출 재화 및 용역

- 무관세 구역(NTZs)에 있는 조직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 규정은 0% VAT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관세 구역(NTZs)에 있는 조직에 직접 제공되고 NTZs 내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
  - 수출가공기업(EPEs)에 제공되는 운송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공장, 항만, 창고에서의 컨테이너 처리; 공장, 항만, 공항 등에서의 상하역 서비스 및 관련 비용 예: 서류 처리 수수료, 통관 수수료, 봉인 수수료, 취급 수수료, 포장 비용 등).

수출가공기업(EPEs)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0% VAT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각 서비스 유형별로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0% VAT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평가하거나,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추가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KPMG는 각 사례별로 0% VAT 적용 가능 여부를 기업과 함께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무관세 구역(NTZs)에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NTZs 내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만 0% VAT가 적용됩니다. NTZs 내에서 소비되더라도 수출 생산 활동과 관련이 없는 재화 및 서비스에는 0% VA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할 관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업은 0% VAT 적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2. 비현금 결제 증빙

-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수입 재화 포함)에 대한 비현금 결제 기준 금액은 VAT 포함 500만 VND 이상입니다.
- 비현금 결제의 추가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서면 계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지급
  - 기업의 재무 정책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이 비현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후 해당 금액을 비현금 방식으로 직원에게 상환하는 경우

## 3. VAT 공제 및 환급 요건

-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된 재화, 보세 창고에서의 수출, 외국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품 등 특정 케이스에 대해 input VAT(매입세액) 공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복수의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5% VAT가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사용된 input VAT(매입세액)에 대해 별도로 계상하거나 매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VAT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VAT 환급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 VAT 환급 요건을 보완하여,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 및 VAT를 납부한 경우에만 기업이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발효 및 경과 규정

- Decree 181과 Circular 69는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Circular 69는 기존의 VAT 관련 모든 지침을 대체하며, 외국계 계약자세(FCT)에 관한 Circular 103/2014/TT-BTC 등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합니다.
- 경과규정:
  - 2025년 7월 1일 이전에 투자되어 해당 일자 기준으로 여전히 투자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Decree 181에 따라 VAT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5% VAT가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남은 공제 가능 input VAT(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VAT를 납부한 경우에만 기업은 VAT 환급 요건을 충족하며, 이는 2025년 7월분 또는 2025년 3분기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관심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KPMG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 us

Email: [info@kpmg.com.vn](mailto:info@kpmg.com.vn)

## Korean Desk

**Cho Ethan** (Ho Chi Minh City)  
Director  
E [wooccho@kpmg.com.vn](mailto:wooccho@kpmg.com.vn)

**Seol Young-Sik** (Hanoi)  
Director  
E [Youngsikseol1@kpmg.com.vn](mailto:Youngsikseol1@kpmg.com.vn)

**Kang Shinmok** (Ho Chi Minh City)  
Senior Manager  
E [shinmokkang1@kpmg.com.vn](mailto:shinmokkang1@kpmg.com.vn)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Limited, KPMG Tax and Advisory Limited, KPMG Law Limited, KPMG Services Company Limited, all Vietnamese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Scan to visit our website: [kpmg.com.vn](https://kpmg.com.vn)